세금 고민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으로 해결하세요

- 국세청 . 2020. 4

- (개요)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 *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컨설팅 내용)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혜택)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 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 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 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는 무엇인가요?

- (제도개요)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배경)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가 있어 효과적인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l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l

-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 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 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9.12.24.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 또한,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 및 신고가 어려운 사유〉

(단위: %)

		업체수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회계 · 세무 전문인력 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없다
매출액	50억 미만	234	31.6	29.1	23.5	15.8	-
	50-200억 미만	171	38.6	24.6	21.6	14.6	0.6
	200억 이상	80	36.3	21. 3	33.8	5. 0	3.8
	모름/무응답	17	35.3	11. 8	41.2	11.8	-
계		502	34.9	25.7	25.1	13.5	0.8

* 출처 :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11.)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가 신청할 수 있으며,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 (1순위)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 (2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 (3순위)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 (4순위)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 (5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 (신청기간 및 방법)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2020. 5. 1.(금)~6. 1.(월)까지 홈 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 세무컨설팅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팝업화면」또는「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법인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월)까지 결정·통보합니다.
 -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르나요?

I 성실납세협약제도 vs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I

	성실납세협약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 청 대 상	수입금액 300~1,500억원 미만 법인	수입금액100~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선정 심사기준	내부세무통제기준 갖춘 법인, 시업의 계속성, 신고 성실성 등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우선 선정
기 간	3년 (갱신 횟수 제한 없음)	수입금액100-500억원(1년) 수입금액 500~1,000억원(2년)
성실신고 검증	의무사항	선택사항

 $2020 \cdot 04 \cdot 29$ www.taxpark.com **23**

- (신청대상 확대) 수입금액 300억~1,500억원 미만 법인에서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 * 신청대상 : (종전) 300억~1,500억 원 11천개 → (개선) 100억~1,000억 원 33천개
 -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협약기간(3년), 혜택 등 은 그대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 (선정심사기준 완화) 내부세무통제기준*,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
 -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 (커설팅 기간 단축) 커설팅 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 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수입금액 100억~500억 원 1년간, 500억~1,000억 원 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
- ◉ (성실신고 검증 선택) 경우에 따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 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컨설팅 기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간, 500억~1,000 억 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세무컨설팅)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연도)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20.5월 신청법인: 100억~500억원 '20사업연도, 500억~1,000억원 '20~'21사업연도
 - 다만, 기업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주요 지원내용)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합니다.
- (성실신고 검증)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I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 I



- * 정기조사대상 선정제외는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 제공
-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컨설팅 신청 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One-Stop으로 실 시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서비스 일원화)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0 \cdot 04 \cdot 29$ www.taxpark.com **25**

- (신고내용 확인·감면사후관리 제외)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 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 성실납세 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코너*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 * 접근경로: 국세정보)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 또한,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 타부처 소관의 애로·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하여 관련 부처와 통보·협의하겠습니다.
- 한편,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게 국세청 발간책자·뉴스레터 제공, 세법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격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및 관할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문의 〉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22~4	서울청 법인세과	(02)2114-2948~51
중부청 법인세과	(031)888-4851~6	부산청 법인세과	(051)750-7452~8
인천청 법인세과	(032)718-6492~5	대전청 법인세과	(042)615-2482~5
광주청 법인세과	(062)236-7482~5	대구청 법인세과	(053)661-7482~5

붙임 1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선정〉

- (지원대상 및 방법)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 (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운영인력 범위 내에서 대상법인을 선정합니다.
 - *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 *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검토

〈세무컨설팅〉

- (대상 세목)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입니다.
- (세무컨설팅)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 설팅이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 검증)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합니다.

〈혜택〉

-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 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 고가산세가 면제되며.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붙임 2 -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비교

구 분	성실납세협약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개 요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함께 협의·해결하는 제도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 성장 을 지원하는 제도	
최초시행	'09년	'20.7월	
신 청 대 상	수입금액 300억~1,500억원 미만 법 인 *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 (신청제외)조세범 처벌, 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업 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현행 중소기업 업종기준)	
협약기간	3년 (갱신 횟수 제한 없음)	1~2년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 1년 수입금액 500억~1,000억원 미만 : 2년	
신청방법	매년 7~9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접수	매년 7~9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접수 (20년은 5월에 접수)	
선정 심사기준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의 계속성, 신고 성실성 등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등 우선 선정 * 신규법인, 결손법인도 선정 가능	
세무진단	정기 세무진단 연 1회(3~10일), 협약 법인 요청에 의해 수시 세무진단 실시	연 1회 정기 세무컨설팅 실시(3일) *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시 컨설팅 실시	
혜 택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검증(3~10일)을 통해 성실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신고내용 확인 제외,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실 시한 성실신고 검증(4~5일)결과 성실 납세이행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붙임 3 -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7 7 7 7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4 C15	-	
		퍼그레츠에트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_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_	
8. 광업	В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_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_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_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000억원 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_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0억원 이하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Н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평균매출액등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I.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	N76	100 45 14
44. 교육 서비스업	Р	

붙임 4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 ◉ 세무컨설팅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백억~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 (신청기간) 2020.5.1.(금) ~ 2020.6.1.(월)
-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제출
 - *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팝업화면,또는 '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
- (선정심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선정기준*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0. 6.30.(월)까지 결정·통보합니다.
 - *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 ◈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
 - ◈ 내부선정기준 심사
 - ▶(납부성실도) 체납 無
 - ▶(세무조사결과)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기공비율 등
 - ▶ (법령준수성) 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

붙임 5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8포기법 제구인일이 단정시				
1.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태 · 종목			
⑤본점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7)기 업 유 형	【(7)기 업 유 형│ '' '- '- '- '- '- '- '- '- '- '- '- '			
2. 신청 세목 (법인세는 필수 신청 세목임)				
① 모든 국 세 ② 법 인 세 ③부;	가 가 치 세 ④ 원 천 세 ⑤ 2	기타()		
3. 협약기간				
20 ~ 20				
4. 성실신고 검증 신청 여부 여 (), 부 ()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ㅇ ㅇ ㅇ (법인인감)				
지방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회사소개서(사업현황, 회사조직, 출자관계 등)				
2.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갖춰진 법인인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2020 \cdot 04 \cdot 29$ www.taxpark.com 31

붙임 6 - 예상 질문 및 답변

협약체결 법인이 국세청(전담팀)의 답변·입장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법인이 공개하는 세무문제(전담팀)의 답변 및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 법인은 전담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미공개시 어떠한 불 이익이 있는지?

세무문제 공개여부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으나, 만약 자진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법인이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라하더라도 업종별 주요 쟁 점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적절한 처리여부를 검토·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 법인은 모두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협약진행과정에서 공개 논의된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 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신고 검증을 통해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 검증 받은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협약대상 사업연도에 한하므로 협약체결 이전의 과거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탈세제보 등 추후 명백한 조세포 탈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협약은 효력이 상실하며, 별도로 불 A 이익은 없습니다.

국세청(전담팀)이 실시하는 현장출장은 또 다른 세무간섭이 아닌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협력단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해가는 제도로

세무쟁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Α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 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고 현장출장 일정도 기업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Q 성실납세협약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Α

Α

성실납세협약제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을 갖추고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없는 중소규모기업과 신규법인이라도 세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점이 다릅니다.

Q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바뀌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이 신청 기준금액인 1,00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협약은 당초 체결한 협약기간까지 유지되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이 협약기간 중에 수입금액이 500억~1,000억 미만으로 증가하더라도 협약기간(1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모든 업종이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인가요?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은 아니며. ①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이고, ②「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400억~1,50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0 1 1 1 1 2 1 1	_ , , , , ,
	업종	직전 사업연도	업종별 중소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수입금액	규모기준*	신청대상 해당여부**
	가구 제조업	1,200억원	1,500억원이하	×(1,000억원 이상)
		900억원	1,500억원이하	0
A	도·소매,건설업	900억원	1,000억원이하	0
	 의약품 제조업	900억원	800억원이하	×(중소기업 미해당)
		700억원	800억원이하	0
	 보건업 및	900억원	600억원이하	×(중소기업 미해당)
	사회서비스업	500억원	600억원이하	0
	숙박 및 음식점업	500억원	400억원이하	×(중소기업 미해당)
		300억원	400억원이하	0
	교육 서비스업	90억원	400억원이하	×(100억원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